의안번호	제37호	
의 결	2023. 4	
년 월 일	(제 301 회)	

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3. 4

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

제37호

제출년월일 : 2023. 4. . 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3조)
 -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변경·실적점검·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
 -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
 -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
 -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~ 12조)
 - 위원장(부군수)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구성
 - 군수 임명 또는 위촉
 - 당연직 위원: 행정복지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자치행정과장, 주민복지 지원과장, 관광문화체육과장, 인구교육가족과장, 경제과장, 농정과장, 도시건축과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 소장
 - 위촉직 위원 :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,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자, 그 밖에 전문성과 역량 있는 사람
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(안 제13조)
 -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교통·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
-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(안 제14조)
- 노후・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- 기타사항
-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: 해당없음 (기획예산담당관-1755)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(기획예산담당관-1757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반영 (인구가족과-7981)
- 입법예고(2023. 3. 10. ~ 2023. 03. 31) : 제출 의견 없음

금산군 조례 제 호

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를 따른다.
- 제3조(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- 1.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 - 2.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
 - 4.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
 - 5.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

- 7. 법 제25조제3항 및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한다)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드는 비용의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 · 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산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: 행정복지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자치행정과장, 주민복지지원과장, 관광문화체육과장, 인구교육가족과장, 경제과장, 농정과장, 도시건축과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 소장
 - 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 - 가.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 - 나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다.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- 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.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6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

경우
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- 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.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

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-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(開議)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
- 2.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
- 3.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인구감소대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· 보존에 관한 사무
- 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
- 제12조(수당 등)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)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산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보육・교육・의료・주거・교통・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
 - 2.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 · 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
 - 3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
 - 4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·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

제14조(문화・관광・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)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

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 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하려 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·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범위·절차·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.
- 제15조(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)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 - 1.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

비용추계서(제4조제2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O 비용발생 요인 : 위원회 참석 수당

O 관련조문: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2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O 금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(산출기초 등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근거		
총 계	1,540			
사무관리비 - 위원회 참석수당	1,540	- 70,000원 × 11명 × 2회 = 1,540,000원		

다. 재원조달방안

O 일반회계 예산 추가 편성(군비)

3. 작성자

행정복지국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(☎041-750-4110)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	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(2026년)	(2027년)	계
λ	레 입	_	_	_	_	_	_
X	· 출	1,540	1,540	1,540	1,540	1,540	7,700
위원회	회의 참석 수당	1,540	1,540	1,540	1,540	1,540	7,700
7	재원 조달						
	소 계	1,540	1,540	1,540	1,540	1,540	7,700
의존 재원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540	1,540	1,540	1,540	1,540	7,700
	지방세	1,540	1,540	1,540	1,540	1,540	7,700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기 금						
 고기	 업 특별회계						
	기 타 부담, 민자 등)						

붙임 2

관계 법령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

- 제9조(시·군·구 및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)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.
 - 1.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·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 - 2. 제3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도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
 - 4.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
 - 5.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
 - ② 시·군·구위원회와 시·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, 지역 대표성,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

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-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- 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3.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- ③ 시·도와 시·군·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·군·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위원회와 시· 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11조(생활권 연계·협력 추진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(이하 "생활권"이라 한다)을 설정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와 협의를 거쳐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,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,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·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·도기본계획 및 시·군·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·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·교육·의료·환경·복지·문화·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.
- 제27조(노후・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・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・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노후・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후・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